

입시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전형유형별 자격기준 설정 및 심사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입시위원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대학입학 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
4.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(전형유형·전형자료·자격기준·사정방법·모집형태·전형일정·모집인원의 배분 등)
5. 대학원 입학전형 전형계획 및 주요사항
6. 특수대학원 입학전형 전형계획 및 주요사항
7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소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3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